

<별표 4> 주요출자자 요건

구 분	요 건
1. 주요출자자가 「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	가.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“자기자본”이라 한다)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일 것 나.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(가)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상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(나)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. 다만,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2호 나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. 당해 금융기관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(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)의 부채비율(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라.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 차입(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기업어음·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)에 의한 것이 아니며, 그 출처가 명확할 것 마. 「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(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말하며,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호에서 같다)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. 다만,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바. 최근 5년간 법, 영, 금융관계법령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「조세범 처벌법」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. 다만,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2. 주요출자자가 제1호외의 내국법인인 경우	가.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일 것 나.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.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(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)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라. 제1호 라목 부터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
3.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	가. 제1호 라목 부터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
4.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	가. 제1호 가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